

# 임신중절 감소를 위한 여성 및 아동 지원 정책 방안

이유리 · 김소윤 · 이일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sup>1</sup>,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sup>2</sup>,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sup>3</sup>

= Abstract =

## Mother and Children Support Policy to Reduce Abortion Rate: A Comparative Study

Yu-Ri Lee<sup>1</sup> · So-Yoon Kim<sup>2</sup> · Il-Hak Lee<sup>3</sup>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sup>1</sup>,  
Department of Medical Law & Ethics, College of Medicine<sup>2</sup>, Bioethics Policy Research Center<sup>3</sup>,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which can reduce abortion in Korea, through comparisons with and analyses the present preventive program of abortion. It focuses on mother and children support policy to reduce abortion rate and make a social support infrastructure.

**Methods:** A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accomplish this goal, the mother and children policies in Korea is compared with the five countries in several categories of the purpose, the orientation, the standard, and the procedure. For each category,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are presented.

**Results:** Abortion is method that society uses to control its population. As medical abortion becomes safe and reliable, many countries adopted it for population control. In Korea, while abortion remains illegal except limited medical and ethical conditions, Korea is still among the nations with highest abortion rate.

**Conclusions:** There is proposal to reduce abortion rate through strict application of criminal liability. A social welfare policies adopted in other countries were introduced, and possibility of adopting policies was discussed.

---

**Key Words:** termination of pregnancy, abortion, mother and children support policy

## 서론

---

교신저자: 이일학,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50  
연세의료원 종합관 307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전화: 02-2228-2671, 전송: 02-2227-7718,  
E-mail: ilhak.lee@gmail.com  
원고접수: 2010년 9월 13일, 1차 수정: 2010년 10월 27일  
2차 수정: 2010년 11월 19일, 원고채택: 2010년 11월 19일

임신중절의 문제는 가족제도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 사회, 문화적 요인과 함께,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논란, 생식의학의 발전과 같은 의학적 요인도 관련된 복잡한 논의 구조를 갖는다. 예컨대 임신중절은 법, 윤리, 여성, 정치와 의학의 접점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의학의 발전으로 수정부터 배아와 태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일정한 재태기간이 지난 태아에게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집중치료술과 같은 의학적 발전은 태아의 지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동시에 의학 기술의 향상으로 인공임신중절이 비교적 안전한 의학적 시술로 받아들여지면서 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여성운동은 가족과 양육의 굴레에서 여성을 해방하기 위한 정치적 논제로 피임과 낙태 권리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인구증가가 사회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이 인구 조절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부담을 지우게 되자 대부분의 정부는 인구 조절을 위한 임신과 출산의 통제를 시도한다. 피임 도구와 기술의 제공이 일차적인 수단이고 인공임신중절은 피임에 실패한 여성에 대한 이차적인 인구조절 정책이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와 가정을 유지할 후속 세대의 출산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 또한 정책적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사회와 가정을 유지하고, 가능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인공임신 중절은 우리 사회에서 드물게 보는 현상도 아니며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사태도 아니다. 동시에 우리는 인공임신 중절을 수용하는 동기가 다양하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된다. 정부는 여성이나 태아 영아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임신과 출산은 임신한 여성 개인사로 치부되었으나 그 과정에 많은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고 여성은 이런 제약에 대해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수단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동기를 가진 집단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를 일반화하여 평가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접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절의 문제는 어떤 도덕철학적 문제, 특히 태아의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생명권)과 관련된 사람됨(per-

sonhood), 자율성(autonomy) 등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태아가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결론만 얻는다면 모든 임신중절에 관한 금지가 가능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모든 임신중절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임신중절에 관한 기준이 되는 판결인 로우 대 웨이드 사건을 심의하면서 “우리는 언제 생명이 시작하는가에 관한 어려운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의학, 철학과 신학의 각 학문에서 훈련받은 이들까지도 어떤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인간 지식의 발달 수준에서 법관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어떤 속고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여 도덕철학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 태아의 지위에 관한 법적 해석만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다. 예컨대 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문제도 태아의 지위나 임신중절의 도덕성과는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임신중절을 허용할 수 없는 죄악으로, 또한 실정법의 위반이라 주장하는 입장이나 임신중절의 권리는 임신 말기까지 허용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믿는 입장에서도 여성과 태어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정책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결국 임신중절의 빈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서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임신중절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 정책은 태아의 생명이 기본적으로는 생명으로서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 이 가치를 보호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

##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임신중절 감소 정책 중 특히 미혼 모관련 정책을 비교제도론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미혼 여성의 임신의 상당수가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접근은 가치를 갖는다. 특히 가족 중심의 사고가 주를 이루는 한국의 상황에서 미혼여성은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에서는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이

에 유사한 정책의 존재여부와 그 적절성을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 성 적

### 1. 임신중절 감소를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프라 현황

최근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범위에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회적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임신중절을 남발해서는 안 되고 인공임신중절을 줄여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국가지원과 사회적 환경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인공임신중절 남발을 막을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내부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 향후의 법률 개정, 처벌기준 등의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접근하는 엇갈리는 시선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제공되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미혼모에 특정되지 않은 보편적 사회보장 및 수당지급, 보육지원, 의료급여 등의 서비스가 있다. 외국에서 제공되는 소득보장이나 아동수당 제도, 학업지원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형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미혼모 문제는 언론을 통해 피상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실질적인 대안 모색에 인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혼모 관련 정책은 대부분 출산 전 또는 직후에 관련된 단기적인 시설 보호위주의 서비스에 국한되었으며, 미혼모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접근은 없고, 미혼모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보다 문제해결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보편적 사회보장 및 수당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해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에서처럼 다양한 가정의 한 형태로 수용하여 보편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

2) 보육시설  
미혼모를 위한 정책에는 저소득 모자가정 특별지원책에 근거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의 입소우선순위, 보육비용의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육미혼모의 아동 양육 상의 어려움으로 아동양육비 부담이 심한 상황이다.

3) 공공부조  
미혼모에 대한 소득보장이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4) 의료지원  
미혼모를 위한 의료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5) 교육 및 훈련지원  
우리나라는 10대의 미혼모에게 필요한 학교복귀 프로그램이나 학업보장을 위한 학업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가 빈곤과 복지 의존에서 탈피하여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체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6) 성교육 및 예방정책  
우리나라는 가임기여성의 생식건강증진을 위하여 모자보건과에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과 피임사후관리,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공익광고를 시행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

며,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아직도 실질적인 피임교육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그동안의 성교육이나 피임교육의 효용성도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 7) 주거지원

미혼모를 위한 복지시설은 임신한 미혼여성의 분만과 건강회복을 지원하는 미혼모자시설과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공공생활가정, 모·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에 거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미혼모가 어린 여성이라는 점과, 이들이 모성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립과 자녀양육의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가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8) 부성책임 강조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혼부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비지급 강제제도 등 부성책임 강조 정책들이 도입되어 있지 않고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 2. 외국의 사회적 인프라 상황

### 1) 미국

미국은 독신모 가정을 위한 공공부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미혼모의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비율이 매우 높은 형편이다. 미국의 미혼모 정책은 크게 청소년의 10대 임신 예방하는 방향과 청소년들이 절제하는 성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미혼모 관련 정책목표는 10대 청소년들의 임신율을 30% 이상 낮추는 것이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로 10대 청소년의 임신 및 10대 미혼모 발생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의 10대 임신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성행동을 시작하는 연령을 가급적 늦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미혼모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2) 일본

일본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미혼모 발생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만을 위한 특화된 법이나 정책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모자가정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6). 일본의 모자가정은 각종 세제 혜택, 취업교육, 주택보호, 소득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정부는 직업훈련제공, 취업알선 등 여성가구의 취업을 통한 모자가정의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모자가정의 경제적 문제와 자녀양육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자녀와의 생활양립을 위해 좋은 여건의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밖에 공공보육시설을 통한 양육환경 적정화, 공공부조를 통한 지원, 저소득층 모자가정을 위한 정책이 일본의 사회적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 3) 캐나다

캐나다는 미혼모 정책이 아동을 키우는 독신모 관련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국가와는 달리 지방세, 중앙정부세금의 종류, 아동연령 및 수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별화 하였다. 캐나다의 미혼모 정책은 미혼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정책과 이미 발생한 미혼모에 대한 지원 정책의 두 가지 틀로 나눌 수 있다. 예방정책으로는 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여 임신을 늦추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발생한 미혼모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여 취업과 교육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업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직업을 통한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4) 영국

영국의 미혼모 지원 제도는 사회적 배제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미혼모가 교육과 노동, 취업훈련에 참여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에서 받게 되는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혼모 정책을 모자가정이나 독신부모의 정책 틀 안에서 다루고 있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보다 나은 예방'과 '보다 나은 지지'를 이루는 것으로 미혼모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이미 발생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예방정책으로는 예방교육 및 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정책은 미혼모에게 교육기회 제공, 학업성취 강조,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예방정책에서 남성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부성책임의 강조성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5) 독일

독일의 미혼모 정책도 독신모 관련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독신모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다. 한부모 가정이나 독신모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혼부 생활비 지급을 의무화 하는 등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이미 발생한 미혼모의 지원에 관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독일은 혼인을 통해 태어난 아동과 혼외로 태어난 아동 사이의 법적 차별을 없애는 방향을 가지고 양육비를 제공하는 세제혜택, 아동수당 제공, 아동 부양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6) 소 결

각국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미혼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1).

##### (1) 보편적 사회보장 및 수당지급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혼모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동수당제도나 세제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수당제도의 경우 일본은 아동의 의무교육 취학 수료 전까지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자녀세금우대 제도를 시행하여 18세 이하 자녀들을 둔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해당 가정에 매월 정부에서 아동수당

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 또는 양육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일은 출생 후 24개월까지 아동양육 수당을 지급하며 아동출생 후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인공임신중절 감소를 위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저소득층 근로소득공제와 아동세액 공제를 시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일본은 아동부양 공제혜택, 육아휴직 중 보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녀세금우대제도, 자녀 혜택 보조금 지급제도, 장애아동 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독일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금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2) 보육시설

보육시설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미국은 보육시설에 대해 정부개입이 미미한 상황이며, 캐나다도 재정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는 공공보육시설의 비율이 60%로 높은 편이며, 공사립을 막론하고 보육료에 관한 정부부담률이 68~89%로 높은 편이다. 영국은 육아개발센터와 보육시설이 새로 설치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취업부모의 보육료 경감을 위한 보육 세금 공제, 육아보조금 확대, 방과 후 보육시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3세 이상의 취학 전 아동이 유치원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렴하고 수준 높은 보육시설의 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다.

##### (3) 공공부조

공공부조와 관련된 지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사회복지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빈곤가족을 위한 공공부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아동의 부가 없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모자세대에게 일정수당을 지급하는 아동부양수당제도와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모자 과부복지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사회복지조의 자격요건에 한부모 가정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이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며, 직장 내에 보충급여제

표 1. 각국의 미혼모 및 아동지원

	미 국	일 본	캐나다	영 국	독 일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신모 가정을 위한 공공부조</li> <li>■공공부조 의존비용 높음</li> <li>■클린턴 정부부터 부시 정부까지 정책기조 이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자가정의 한 유형으로 분류, '모자 및 과부 복지법'의 적용</li> <li>■세계해택, 취업교육, 주택보호, 소득지원의 혜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신모 관련 정책 중심</li> <li>■정부의 수준, 아동연령 및 수에 따른 세계해택이 차별적</li> <li>■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이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배제 문제의 해결차원에서 마련 있음</li> <li>■독신부모의 정책 틀로 다름</li> <li>■미혼모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배제의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신모 관련 정책 중심</li> <li>■독신모를 위한 경제적 혜택</li> <li>■미혼부 생활비 지급 의무화</li> </ul>
개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의 10대 임신 예방하는 방향</li> <li>■청소년들이 성 행동을 절제하도록 하는 방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부조나 저소득층 모자가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혼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li> <li>■기발생 미혼모에 대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혼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li> <li>■기발생 미혼모에 대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인을 통해 태어난 아동과 혼외로 태어난 아동 사이의 법적 차별 없애는 것</li> </ul>
정책의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는 10대 청소년들의 임신율을 30%이상 낮추는 것</li> <li>■청소년들이 성 행동을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고, 성병 및 AIDS 감염 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 취업을 통한 모자가정의 자립이 필수적이라고 봄</li> <li>■여성들의 직장생활과 자녀와의 생활양립을 위한 좋은 여건의 창출을 알선함</li> <li>■모자가정의 경제적 문제와 양육문제에 초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여 자립적인 생활 습관 함</li> <li>■독신모 가정의 어려움을 줄여 줄 수 있는 다양한 공공부조 및 직업교육을 가질 수 있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대의 미혼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 성교육</li> <li>■10대, 20 미혼모의 교육과 노동, 취업훈련에 참여를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 가정이나 독신모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li> <li>■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보다는 기발생 미혼모의 지원에 관한 정책이 주요</li> </ul>
프로 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책임, 근로기회조정법</li> <li>■청소년 가족생활 프로그램</li> <li>■남자청소년 대상 프로그램</li> <li>■학교기반 예방 프로그램</li> <li>■가족계획 프로그램</li> <li>■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li> <li>■위기청소년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수당제도</li> <li>■높은 공공보육시설의 보급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신모 직업기술 습득 기회</li> <li>■부성책임 강조하는 정책</li> <li>■미혼모에게 보육시설, 사회적서비스, 교육수당을 제공</li> <li>■다양한 세계해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혼모의 교육기회 제공 및 취업 기회 제공 (20 Sure Start Plus)</li> <li>■국가적 차원의 캠페인</li> <li>■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행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육비를 공제하는 세금혜택</li> <li>■아동수당 제공</li> <li>■아동 부양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li> <li>■공공부조</li> <li>■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li> </ul>
정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편적 사회보장장 수당제도 없음</li> <li>■저소득층 근로소득공제(EITC), 아동세액공제(CTC): 간접적 분배가 가능하도록 한 세금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혼모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미흡</li> <li>■아동수당제도: 아동의 의무교육 취학 수료 전까지 금액 지원</li> <li>■세계지원: 아동부양공제혜택, 육아휴직 중 보험료 면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험번호(SIN) 필요</li> <li>■아동수당제도 UCCB (New Universal Child Care Benefit)</li> <li>■자녀세금우대 (CCTB, Canada Child Tax Benefit)</li> <li>■국가자녀해택보조금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장애아동급여 (Child Disability Benefi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급여제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국민보험체계에서 지급</li> <li>■아동수당제도: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을 보충, 양육할 경우 지급</li> <li>■아동세제공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아동양육 시 세계해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수당제도 : 아동출생 후 18세까지 지급, 출생 후 24개월 아동양육수당 지급</li> <li>■연금수급권: 10세 이하의 부양아동을 가진 여성은 연금수급권 가짐, 아동양육기간 연금 계산에 반영</li> <li>■세계지원: 양육비부담 경감을 위한 세금 공제</li> </ul>

	미 국	일 본	캐나다	영 국	독 일
보육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개입이 미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높은 공공보육시설 비율(60%)</li> <li>■공사립을 막론하고 정부부담률이 68~89%로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를 기혼여성의 취업 장애요인으로 인지</li> <li>■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개발센터, 보육시설</li> <li>■저소득 취업부모의 보육료 경감을 위한 보육세금 공제, 육아보조금 확대, 방과후 보육시설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음</li> <li>■저렴하고 수준 높은 보육시설의 보급</li> </ul>
공공 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혼모에게 가장 실효성 있음</li> <li>■AFDC(Aids for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이 TANF로 대체 근로연계요소 강화</li> <li>■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빈곤가족을 위한 공공부조 정책</li> <li>■이로써 양육환경 더욱 어려워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부양수당제도 : 부가 일정한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모자세대에 게 일정수당을 지급</li> <li>■특별아동부양자금 : 아동부양수당이 감소한 모자개정에 법률 개정 후 5년간 차액을 무이자 대어</li> <li>■모자과부복지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부조를 통한 지원</li> <li>■직장 내의 보충급여제도를 통해 저임금 고용자를 지원</li> <li>■사회부조 자격요건에 한부모 가 장을 포함하고 있음</li> <li>■한부모 가정이 직업을 찾고 알맞 은 직업을 선택할 것을 권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수당 : 최저소득한도 이하의 국민 여성에게 지불됨</li> <li>■소득보조 : 모자가정의 모에게 매주 지급되는 제도</li> <li>■부모가정아동 임시급부 가계소득보조급부</li> <li>■편부모를 위한 추가 소득보조</li> <li>■보조급부 :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액수를 조건없이 보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부조를 통한 지원 : 취업, 연금, 세제 혜택 등</li> <li>■공공부조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li> <li>■모부자가정 생활비지급 청구 제도 : 독신모나 독신부는 아동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방사회국에 청구가능</li> </ul>
정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보호(Medicaid): 저소득층 미혼모들에게 의료혜택</li> <li>■포괄적 모자건강서비스를 시행 산전보호소, 공공간호서비스, 예방접종, 학령기아동의 건강진단 등 산모와 아동의 건강유지를 위한 예방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클리닉 센터: 낙태한 여성을 1명의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일괄 책임 하에 일차보건의료를 제공, 특히 중고생 낙태여성에게 상담 및 교육을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건강보험프로그램(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을 통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가능,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며 세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보건서비스를 통해 가정의 로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음</li> <li>■아동, 출산 전후의 여성, 통해 저 소득층은 일부본임부담금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보험상의 규정으로 독신모나 독신부가 취업활동을 하는데, 부양자녀의 간호문제가 생긴 경우, 유급간호휴가 가능</li> </ul>
교육 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대 임신예방 프로그램(TAPP, Teen Age Pregnancy Prevention)</li> <li>■특별학교로 학교 내 학교 교를 통해 학업유지 및 검정고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직업 안정소에 미혼모를 위한 직업상담원 배치</li> <li>■사업주가 고용 촉진하도록 지원</li> <li>■자립지원 교육훈련 급부사업 : 모자가정의 모가 지정교육을 받고 수료한 경우 경비 지원</li> <li>■모자가정 고등지능 훈련촉진비 사업 : 자격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은 경우 비용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대 부모들이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보조, 수입에 따른 상환 용자제도, 학교 계속 다니기 운동 추진</li> <li>■양육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부모 교육 및 직업훈련 시행</li> <li>■구세군희망센터 지원 유별 센터 사업 : 16~19세 미혼모와 자녀가 살며 학교와 보육시설의 기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혼모의 교육, 직업훈련, 취업 기회 연계를 위한 개별 전문상담가 배치,하여 미혼부모들과 1:1 상담실시</li> <li>■교육유지수당(EMA, 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s) : 미혼모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업지속 교육지원 : 10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임신으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비용 무이자대출</li> <li>■직업교육 지원비</li> <li>■자녀학비 보조금 및 장기용자</li> </ul>

	미 국	일 본	캐나다	영 국	독 일
성교육 및 예방 정책	<p>■AFL (the Adolescent Family Life Demonstration &amp; Research)</p> <p>1. 결혼 전까지 성행동 지연교육</p> <p>2. 10대 부모 가족의 문제 개선을 위한 개입 프로젝트</p> <p>3. 청소년 혼전 성관계, 청소년 임신과 양육에 대한 원인 및 결과연구에 재정지원</p>	<p>■중고등학생 금욕교육 프로그램</p> <p>■정책 목표</p> <p>: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성관계를 갖지 않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p> <p>■학교 기반 클리닉 프로그램 : 주치의의를 통한 상담, 간단한 피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클리닉중심 프로그램 존재</p>	<p>1. 아동청소년기에 성공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임신을 연기할 분명한 이유</p> <p>2. 청소년건강클리닉: 임신을 연기하는 방법을 인지하도록 함</p> <p>3. 이미 발생한 미혼모 지지기반 조성하는 것</p>	<p>■10대 미혼모 발생 감소를 위해 양질의 상담 및 피임관련 서비스 제공, 효과적인 성과 이성교제 교육(SRE, Sex and Relationships Education)</p> <p>■교육부는 SRE를 위한 수업계획과 사례연구가 포함된 실천지침서 배부,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병감염에 대한 교육</p> <p>■전국부모포럼 개최</p>	
정책 내용	<p>■양육미혼모들을 위한 그룹홈 (maternity group home)</p> <p>1. 개별 또는 공동의 주택 제공</p> <p>2. 슈퍼비전을 통한 자립기술제공</p> <p>3. 사례관리를 통한 관리</p>	<p>■지방공공단체가 공영주택을 공급하도록 법령으로 명시</p> <p>■시영주택의 입주가 일반인보다 약 7배 정도 유리하도록 시영주택 임대추천제를 실시</p>	<p>■저소득층 가정 및 미혼모에게 정 부보조 주택 입주 혜택</p> <p>■저소득 주택소유자에게 주택수 리비용을 보조</p>	<p>■한 부모 가정에 주택급여, 난방 보조비 등의 혜택 제공</p> <p>■10대 양육모를 위한 주택지원으로 서로 다른 5개 주택모델에 대해 시범사업</p>	
기타	<p>■양육비지급 강제제도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gram) : 생물학적 부성의 의료적·경제적 책임 강제</p>	<p>■모자복지시설 운영</p> <p>1. 생활지원 및 상담사업 실시</p> <p>2. 모자복지상담원 배치</p> <p>3. 모자가정 실정조사, 모자가정 자립지원을 위한 모의취업, 모자복지자금 내용 상담지도</p>	<p>■부성책임 강조: 미혼모에게 양육 월생계비, 양육보조금 지급</p> <p>1. 아기의 이름을 친부의 성에 따라 지을 경우 친부는 양육비 부담해야 함.</p> <p>2. 응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나 여권 취소, 벌금, 구속 등의 형벌이 주어짐.</p> <p>3. 아버지가 양육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미혼모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나옴.</p>	<p>■부성책임 강조</p>	<p>■부성책임 강조: 남성이 부담하는 생활비지급의 신속한 결정 및 시행보장</p>



도를 통해 저임금 고용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최저소득한도 이하의 극빈 여성에게 출산수당 지급, 모자가정의 모에게 매주 지급되는 소득보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액수를 조건 없이 보조하는 보조급부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도 사회부조를 통해 취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모자가정 생활비 지급 청구제도를 두어 독신모나 독신부가 아동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방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의료지원

의료지원은 각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의료보호(Medicaid)를 통해 저소득층 미혼모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있으며 포괄적 모자건강서비스를 시행하여 산전보호소 운영, 공공간호서비스 제공,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의 산모와 아동의 건강유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여성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을 1명의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일괄 책임 하에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중고생 인공임신중절여성에게 상담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는 국립건강보험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한 체계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며 재원은 세금을 통해 징수하고 있다.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를 통해 가정으로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로 아동과 출산 전후의 여성의 저소득층일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독일은 의료보험상의 규정으로 독신모나 독신부가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양자녀의 간호문제가 생겼을 경우 유급간호휴가를 주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 (5) 교육 및 훈련 지원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 10대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혼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특별학교로 학교 내 학교 프로그램 및 대안학교를 통해 학업을 유지하고 검정고시도 치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모자가정의 모가 지정교육을

받고 수료한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자립지원 교육훈련 급부사업', 자격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은 경우 비용을 지원해주는 '모자가정 고등지능훈련 촉진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직업 안전소에 미혼모를 위한 상담원을 배치하여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미혼모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10대 부모들이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보조, 수업에 따른 상환 용자제도, 학교 계속 다니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육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부모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구세군희망센터에서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여 16~19세 미혼모와 자녀가 함께 살며 학교와 보육시설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영국은 미혼모의 교육, 직업훈련, 취업기회 연계를 위한 개별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여 미혼부모들과 1:1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혼모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유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도 학업지속 교육지원을 위해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지원비제도, 자녀학비보조금 및 장기용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6) 성교육 및 예방정책

인공임신중절 감소를 위한 성교육 및 예방정책은 일선학교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클리닉을 개설하여 교육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성관계를 갖지 않도록 유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청소년건강클리닉을 운영하여 상담이나 임신 연기 방법 교육, 간단한 피임서비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0대 미혼모 발생 감소를 위해 양질의 상담 및 피임관련 서비스 제공, 효과적인 성과이성교육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교육과 관련된 실천지침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청소년 혼전 성관계, 청소년 임신과 양육에 관한 원인 및 결과 연구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예방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 (7) 주거지원

여러 국가들이 미혼모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거나 입주의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은 미혼모들을 위한 그룹홈의 개념으로 개별 또는 공동의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지방공공단체가 공영주택을 공급하도록 법령으로 명시하였으며 시영주택의 입주가 일반인보다 약 7배정도 유리하도록 시영주택 임대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도 저소득층 가정 및 미혼모에게 정부보조 주택 입주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저소득 주택소유자에게 주택수리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영국은 한 부모 가정에 주택급여, 난방보조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8) 부성책임 강조정책

서구 여러 국가들이 부성책임을 강조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남성이 부담하는 생활비지급이 신속하게 결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미국은 양육비지급 강제제도를 두어 생물학적 부성이 의료적·경제적 책임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아기의 이름을 친부의 성에 따라 지을 경우 친부가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나 여권 취소, 벌금, 구속 등의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양육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미혼모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나오게 함으로써 부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9) 기타

인공임신중절 감소를 위한 다른 제도로는 미국의 경우 여성·영유아를 위한 특별영양보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모자복지시설에 모자복지상담원을 배치하여 생활지원 및 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가정 자립지원을 위한 모의취업, 모자복지자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모자휴양 홈, 모자생활지원 시설운영, 모자가정방문간호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고 찰

한국에서 적절한 미혼모 지원체계는 무엇인가? 앞

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임신중절 감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미혼모의 자립지원, 출산친화적인 환경구축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미혼모의 자립지원

#### 1)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지원

경제적·직업적 대책이 없는 미혼모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와 직업능력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혼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책금의 지급, 직업 및 취업교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미성년 미혼모를 위한 학교교육 제공이 검토되어야 하며, 교육을 받는 동안의 생활비 지원도 필요하다. 미혼모를 대상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미혼모시설 및 양육모 그룹홈 보호자와 지역사회 거주 미혼모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준하는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시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혼모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적인 소득지원 뿐만 아니라, 여성 친화적 직업훈련직종 개발 및 실시와 취업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2) 미혼모 양육환경 개선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보육시설의 확대 및 무료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양육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혼모를 요보호 여성으로 간주하여 저소득 모자가정 정책 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미혼모를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보편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추세이다. 저출산 시대에 양육미혼모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혼모 가족을 인정하여 보편적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미혼모 관련 시설 확충 및 육아시설의 의무적 확충이 필요하다. 주거정책의 경우, 우리나라는 시설정

책으로 국한되어 있으나, 외국의 경우 시설을 포함한 재가중심의 다양한 지원들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지역사회 내의 재가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3) 미혼부 책임 강화

서구 여러 나라에서 자녀의 양육비를 미혼부가 보조하게끔 하는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혼부의 사회적 책임의 공동분담 차원에서 양육비지급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미성년자 및 미혼모들의 출산 이후 학업유지, 사회생활 복귀 및 원만한 가정환경 조성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국가에서 미혼부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2. 출산 친화적인 환경 구축

### 1) 아동수당제도 도입

아동양육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제도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제도이다. 특정 연령까지 매월 일정액수가 지급되므로 독신모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인 건강과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2) 분만 관련 수가 현실화

분만 관련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분만수가는 OECD국가 대비 1/4~1/12 수준에 불과하다. 직업의 특성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분만실에 가까이 있어야 하는 환경에 개인의 사생활을 희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궁지나 경제적 보상 등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정책적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3) 산과의 접근성 강화

산과 진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과실 보상제도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 조속한 도입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산모 상호간에 야기되는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줄여 안정적인 진료를 보장하고, 벽지 등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또는 분만하는 병, 의원이 없는 경우, 병원 설립, 직원 관리 등의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경영분기점에 해당하지 못하는 저출산 지역은 최소 운영비용 충당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300명상 이하의 종합병원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과거에는 모두 있어야 했지만, 현재는 의료법이 개정 되어 위 4개 과중 3개 과만 있어도 되는 등 설립요건이 완화되었다. 그러자 모두 시설비가 많이 들고, 의료사고가 많이 나면서, 경영수입이 낮은 산부인과를 폐쇄하였다. 그 결과가 각 지방에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이유가 되었다.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책은 이념적 갈등이 적은 분야, 즉 정책적 지원,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출산 및 양육의 지원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은 바람직한 지원 정책의 예를 외국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들 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전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여성과 아동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아직 포괄적이며 여성의 능력 향상이나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정부와 사회가 이념적 대립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동시에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추후 정책 개발과정에서 미혼모가 양육과 자기개발 모두를 취할 수 있도록 미혼모의 자기개발, 양육 지원 등의 사회복지 정책이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 서비스가 출산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2006.
-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 대책 수립, 2005.9
- 여성가족부, 영국·독일 한부모가족정책 및 시설연수보고서, 여성가족부 가족지원팀, 2006
- 대한산부인과학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한산부인과학회 공청회-태아측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을 중심으로 자료집, 2010년.
- 강영실, "미혼양육모의 현황", 제7회 서울시여성복지세미나 미혼양육모! 어떻게 도울까?, 서울특별시 여성복지연합회·서울특별시, 2002. 10.
- 고정자, "미혼모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교육농촌 제 28집, 동아대학교, 2002.
- 공일숙, 양육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박성희, 미혼모의 실태·의식분석과 그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시백, 서정애, 박인화 외,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보건복지부, 2002. 11.
- 이유리.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사회적 논의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 조영미, "여성의 재생산권에서 본 낙태와 모자보건 정책". 양현아 편,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사람생각, 20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199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2006.
- Dwyer, Susan.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Abortion. from The Problem of Abortion(3rd). ed. Dwyer S and Feinberg J. 1997.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er.
- Tooley, Michael. Abortion and Infanticid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1972). pp. 37-65.
- Twining, John. 저, 영국의 직업교육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 번역, 한국산업인력공단. 1996
- Warren, Mary Anne. On the Moreal and Legal Status of Abortion, The Monist, 57. pp 43-61.
- Canada Revenue Agency, Your Canada Child Tax Benefit,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cra-arc.gc.ca/E/pub/tg/t4114/t4114-06e.pdf>, 2006.
-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Women in Germany,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bmfsfj.de/Publikationen/women-in-germany/women\\_in\\_germany.pdf](http://www.bmfsfj.de/Publikationen/women-in-germany/women_in_germany.pdf), 2004.
- Roe v. Wade, 310 U.S. 113 (1973)